

제23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도시계획
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0 월 31 일

여 수 시 장 2023.10.31



여수시 조례 제1980호

붙임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1980호

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높이 및 층수”를 “높이”로 하고,
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3층 이하(12미터 이하)”를 각각 “12미
터 이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 (생략)	제25조(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<u>높이 및 층수는</u>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그 높이를 따로 정한 지역의 경우와 「건축법」 제46조에 따라 건축선을 따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.	② ----- ----- <u>높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자연경관지구 : <u>3층 이하(12미터 이하)</u>	1. -----: 12미터 이하
2. 특화경관지구 : <u>3층 이하(12미터 이하)</u>	2. -----: 12미터 이하
3. 사가지경관지구 : <u>3층 이하(12미터 이하)</u>	3. -----: 12미터 이하